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안설명

김구현 의원(성북3)

존경하는 이상목 위원장님,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. 김구현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동 조례안은 현재 서울디자인재단의 제5조(정관)이 「민법」을 근거로 규정하고 있으나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.
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